

친환경 구매정책

제 1 조【 정책 목적과 적용 범위 】

1. 이 정책은 대흥아이비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구매팀에서 수행하는 친환경제품 구매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정책은 친환경제품을 정의하고 친환경 제품의 구매확대와 실적집계를 위하여 수행해야 할 업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친환경제품의 정의 】

이 정책에서 사용하는 친환경제품 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마크 인증 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 제품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저탄소 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에너지효율표시 1~2등급 제품
5.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인증하는 HB(Healthy Building Material) 마크 제품
6. 상기 외 공공기관에서 신규 도입한 인증 및 해당 인증 제품
7. 당사에서 자체 정립한 인증체계와 기준 상 친환경제품에 해당되는 제품

제 3 조【 친환경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

1. 구매팀은 친환경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매계획의 수립, 발주, 자료조사 및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 구매팀은 친환경제품의 범위 확대를 위해 당사가 구매하는 전체 자재를 대상으로 ‘친환경성 향상 가능성과 효과성 검토를 통해 자체 인증체계와 기준을 정립하고 지속적으로 Update 해야 한다.

제 4 조【 친환경제품 구매 계획 】

1. 구매팀은 매년 해당 사업연도 발주예정 전체품목을 검토하여 친환경제품의 구매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친환경제품 구매 실적 목표치

- ② 전년도 친환경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분석과 확대방안
- ③ 친환경제품 관련 유관부서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 5 조【 친환경제품 구매의무 】

구매팀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제품 구매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품목에 친환경제품이 없는 경우
2. 친환경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친환경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예산 내에 구매가 어려운 경우
4. 친환경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5. 발주처나 사업부문의 요청 또는 현장 별 상황에 따라 친환경제품 외의 특정 품목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제 6조【 친환경제품의 구매실적 】

1. 구매팀은 구매계획에 따른 친환경제품의 구매실적을 매월 집계하고, 계획 대비 차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분석을 하여 필요시 방안을 마련한다.
2. 구매팀은 친환경제품 구매실적 집계의 자동화, 체계화를 위해 구매전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Upgrade 한다.

제 7조【 친환경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한 협조요청 】

구매팀은 친환경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하여 유관부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조【 현장구매자재의 친환경제품 구매촉진】

친환경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하여 현장에서 구매하는 자재 중 친환경제품 품목이 있는 경우 제 5 조 (친환경제품 구매의무)를 적용한다.

제 9조【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구매팀은 친환경구매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고 회사의 구매관련 담당자와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2024년 07월 1일 제정